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국립남도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」 개정 사항을 반영·기타 미비점 보완

◇ 주요내용

가.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내에 당직 휴무 부여 신설(제7조)

나. 당직 태만 조치 신설(제10조)

다. 그 외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